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도 참고자료		
보도	2019. 7. 1.(월) 조간	배포	2019. 6. 28.(금)
담당부서	분쟁조정2국	전부일 팀장(3145-5736), 이재철 선임(3145-5737)	

**제목 : 금융꿀팁 200선 - ⑪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 
(대출금리 · 수수료, 불법채권추심 등 관련)**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 200가지를 선정,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
  -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[fine.fss.or.kr](http://fine.fss.or.kr))에도 게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111번째 금융꿀팁으로 ‘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림

**<별첨> [금융꿀팁 200선] ⑪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**

금융감독원은 「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‘금융관행 개혁 포털’ (<http://better-change.fss.or.kr>) 내 ‘국민 참여방’으로 제보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## 1

##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

- (주요 유형) 대부계약 기한연장·갱신시 법령 개정('18.2.8.) 전 법정 최고이자율(연 27.9%)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령하거나,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 지급
  - (최고이자율 초과) 기존 계약에 대한 기한연장·갱신시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(연 24%)을 초과하는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 요구
    - \* 기존 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기한연장 또는 갱신시에도 채무자에게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
  - (선이자 등 공제)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업자가 선이자, 감정비용, 공증비용,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대부금 교부

## 「주요 사례」

- 甲은 '17년 4월 A 대부업자에게 연 27.9%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'18년 4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A 대부업자에게 법령상 인하된 금리(연 24%)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A 대부업자가 이를 거부
- B 대부업자는 '18년 11월 乙에게 연 24% 금리로 2억원 대출을 진행하면서 乙 소유 X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, X 부동산 감정비용 및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천만원을 공제한 1억 8천만원을 지급

- (유의사항) '18.2.8.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% 이자율 상한\*이 적용되며,

\* '19.6.25. 이후 체결 갱신·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이 '약정이자율 + 3%' 이내로 제한됨

- 선이자(선취수수료 포함) 수취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본\*으로 보고,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\*\*로 간주되는바,

\* 다만, 담보권 설정비용(법무사 비용 제외)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원금으로 봄(대부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)

\*\* 사례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연체이자, 체당금, 감정비용, 공증비용,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며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됨

-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

##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

- (주요 유형)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,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청구
  - (최고이자율 초과) 대부이용자가 연 24% 금리로 대출 받은 후 만기 전 상환을 하자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요구
  - (근거없는 수수료 청구) 이자지급 연체 등 사유로 대부이용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부업자측은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요청

### 「주요 사례」

- 甲은 '18년 3월 A 대부업자에게 3천만원(2년만기, 연이율 24%)을 대출받은 후 6개월만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하자 A 대부업자는 甲에게 약정에 없는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(연이율 5%)를 요구
- 乙이 B 대부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B 대부업자는 乙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乙에게 만기 이전 대출금이 상환됨을 이유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

- (유의사항)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\*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

\* 대부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, 실제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 위반 여부 판단

- 또한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는바,
-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신고(☎1332)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

## 3

##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\*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
\* 상사채권(금전채권 포함)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 적용

- (주요 유형)**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, 법원 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등 관련조치를 취한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추심 진행
- **(일부 변제 · 각서 작성)** 대부이용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받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시킴
- **(법원 지급명령)**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을 받은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 추심

### 「주요 사례」

- 甲은 A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장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, A 대부업자는 甲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였고, 甲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모르고 A 대부업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하게 됨
- 乙은 B 저축은행에서 1,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상환을 지체하고 있던 중 C 대부업자가 동 채권을 양수하였으나, 기한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C 대부업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乙에게 채권추심 진행

- (유의사항)**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,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필요
  -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 작성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,
    -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시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,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
  -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이용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<sup>\*</sup>하여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음
- \* ① 지급명령 확정 전 → 이의신청, ②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시 →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

- **(주요 유형)** 대부이용자가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상환을 장기간 연체하거나, 대부업자의 고의적 채권추심 지연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
  - **(양도사실 미인지)** 대부이용자는 대부채권 매각사실을 미인지하고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변제를 거부하여 원리금 상환 장기지체
  - **(채권추심 지연)** 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 채권추심 진행

#### 「주요 사례」

- A 대부업자는 '13년 甲에게 500만원을 대출해준 후 甲이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'14년 B 대부업자에게 甲에 대한 채권을 매각한 후 甲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였으며, B 대부업자는 甲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甲이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'18년 B 대부업자는 甲에 대한 원리금 채권 1,100만원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
- C 대부업자와 200만원 대부계약을 체결한 乙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음에도 C 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자 채무존재를 잊고 있었으나, C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직전 乙에게 원리금 채권 400만원을 변제하도록 요구

- **(유의사항)**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며, 장기연체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
  - 대부이용자는 채권매각통지서 수령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신속히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며,
  - 대부업자가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바,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함

- **(주요 유형)** 제3자에게 채무내용 고지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폭행·협박 등을 통해 채권 추심
  - **(제3자 채무고지)** 대부이용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부이용자의 채무내역을 고지
  - **(대위변제 요구)** 대부이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변제여력이 없는 경우 대부이용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대위변제 요구
  - **(사생활 평온 저해)**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·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평온을 심하게 해침

**「주요 사례」**

- A 대부업자는 甲이 지속적으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채권추심을 위해 甲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甲이 부재하자 甲의 아내와 자녀에게 甲의 채무내역 및 연체사실을 고지
- B 대부업자는 乙과 연락이 되지 않자 乙의 남편 丙에게 문자로 乙의 채무내역 및 상환계좌번호를 송부하면서 대위변제를 요구
- C 대부업자는 丁에게 200만원을 대출한 후 丁이 생활고로 이자상환을 연체하자 C 대부업자는 丁에게 하루 10통이 넘는 전화추심을 진행하면서 욕설·협박을 하여 丁이 공포심을 느끼게 함

- **(유의사항)**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,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
  -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, 문자메시지,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며,
  -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\*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

\*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  
(대법원 2014.5.16. 선고 2013도16404)